

의안번호	2203875
의 퇴 인	이병진 의원
회 답 일	2024. 11. 7.
추 계 번호	24E36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자산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95(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수용자산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특례 신설 - 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장기보유자산·조합입주권 - 내용: 보유기간에 따라 16~65%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table> <tr> <th rowspan="2">보유기간</th><th colspan="2">장기보유특별공제율</th></tr> <tr> <th>일반 자산</th><th>수용자산 등</th></tr> <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6%</td><td>16%</td></tr> <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8%</td><td>20%</td></tr> <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10%</td><td>24%</td></tr> <tr><td>6년 이상 7년 미만</td><td>12%</td><td>28%</td></tr> <tr><td>7년 이상 8년 미만</td><td>14%</td><td>32%</td></tr> <tr><td>8년 이상 9년 미만</td><td>16%</td><td>36%</td></tr> <tr><td>9년 이상 10년 미만</td><td>18%</td><td>40%</td></tr> <tr><td>10년 이상 11년 미만</td><td>20%</td><td>44%</td></tr> <tr><td>11년 이상 12년 미만</td><td>22%</td><td>48%</td></tr> <tr><td>12년 이상 13년 미만</td><td>24%</td><td>52%</td></tr> <tr><td>13년 이상 14년 미만</td><td>26%</td><td>56%</td></tr> <tr><td>14년 이상 15년 미만</td><td>28%</td><td>60%</td></tr> <tr><td>15년 이상</td><td>30%</td><td>65%</td></tr> </table>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반 자산	수용자산 등	3년 이상 4년 미만	6%	16%	4년 이상 5년 미만	8%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	24%	6년 이상 7년 미만	12%	28%	7년 이상 8년 미만	14%	32%	8년 이상 9년 미만	16%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40%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44%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48%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52%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5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60%	15년 이상	30%	65%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반 자산	수용자산 등																																												
3년 이상 4년 미만	6%	16%																																												
4년 이상 5년 미만	8%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	24%																																												
6년 이상 7년 미만	12%	28%																																												
7년 이상 8년 미만	14%	32%																																												
8년 이상 9년 미만	16%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40%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44%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48%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52%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5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60%																																												
15년 이상	30%	65%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5(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장기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인 자산(6~30%) 대비 높은 공제율(16~65%)을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에 대한 양도 시점까지 보유기간, 보유기간별 양도차익 규모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 참고로 국세통계연보에는 부동산 등에 대한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현황 자료는 존재하지만, 국세청에 확인 결과 수용자산 등에 대한 구분은 불가

[표 1]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현황: 2022년 양도분, 결정·경정 기준

(단위: 건, 억원)

보유기간	자산건수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
1년 미만	32,607	11,999	—	11,960
1년 이상	9,199	7,789	—	7,773
2년 이상	9,104	8,380	—	8,344
3년 이상	8,643	8,144	458	7,686
4년 이상	8,584	10,902	609	10,294
5년 이상	7,499	8,577	834	7,745
6년 이상	6,437	7,173	804	6,370
7년 이상	4,836	5,351	743	4,610
8년 이상	4,270	5,139	793	4,348
9년 이상	4,044	6,512	1,032	5,483
10년 이상	4,017	4,503	996	3,509
11년 이상	3,672	4,794	1,009	3,787
12년 이상	3,654	8,256	1,497	6,762
13년 이상	3,705	5,825	1,363	4,465
14년 이상	3,925	6,544	1,748	4,800
15년 이상	3,724	9,351	2,726	6,631
16년 이상	3,839	9,123	2,737	6,391
17년 이상	3,573	7,768	2,344	5,429
18년 이상	2,934	6,482	1,917	4,569
19년 이상	2,558	6,376	1,822	4,558
20년 이상	32,499	68,802	20,683	48,162
기타	1,839	3,729	—	3,729
계	165,162	221,521	44,116	177,406

자료: 국세청, 「2023년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별 양도차익 자료 등이 부재하므로, 수용자산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신설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669	nororand@assembly.go.kr